

#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5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5월 2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,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를 고려함.

## 2. 주요내용

-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“1000분의 8이내”를 “1000분의 6이내”로 함. (안 제5조제1항)
- 조례의 시행의 시행시기를 “2016년”을 “2017년”으로 함.(안 부칙)

#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1000분의 8이내”를 “1000분의 6이내”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2016년”을 “2017년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교육지원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4</u>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.	제5조(교육지원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8</u>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.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<u>2016년</u>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제5조(교육지원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6</u>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.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<u>2017년</u>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00분의 4이내”를 “1000분의 6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,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”을 “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지원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4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, <u>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,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③~④ 생략</p>	<p>제5조(교육지원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6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, <u>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